

2021년 주민세(사업소분) 제도 변경 안내

2020년 12월 19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부과 고지되었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균등분)가 2021년부터는 하나의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되면서 매년 8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율	납 기	납부방법
재산분	개인사업자	250원/m ² (사업장 면적 330m ² 초과)	7월 31일	신고·납부
	법인사업자			
균등분	개인사업자	5만원	8월 31일	부과고지
	법인사업자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 ~ 50만원		

개정 후 (2021년도 부터 시행)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율	납 기	납부방법
사업소분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기본세액 + 사업장 면적이 330m ² 를 초과할 경우 사업장 면적(m ²) X 250원	8월 31일	신고·납부

위의 기본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5만원	
법 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규모	세 액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그 이외의 법인	5만원

따라서,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자는 기본세액(중전 균등분 주민세)과 사업소 연면적(330 m²를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됨)에 대한 세액(중전 재산분 주민세: 250 원/m²)을 합산하여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납부의 방법은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를 작성한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면 편리합니다.

ETAX 접속: <https://etax.seoul.go.kr>

WETAX 접속: <https://wetax.go.kr>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에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사업소분은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의 인지도가 적다고 판단하여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하신 납부서 상에 표시된 산출세액이 정확하게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반드시 8월 3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개정 부칙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기본세액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 분	가산세 계산 대상 금액	부과율
무신고	일반 무신고로 인하여 납부해야 될 세액	20%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로 납부해야 될 세액	40%
과소신고 또는 과다환급	과소신고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10%
	과다 환급신고로 인하여 환급받은 세액	10%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세액 및 과다환급세액	40%
납부지연	지연납부한 세액 X 지연 납부한 일수	25/100000

기타 주민세 사업소분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신고.납부에 당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